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32 | June 2025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심판례]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 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경정)
- [심사]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예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
-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 [예규]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12

- [예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3

-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소득세법

14

- [심판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속한 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부가가치세법

17

- [판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일부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 [심판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지방세법

24

- [예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심판례]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 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3서7120, 2025. 4. 10.

[사안] 청구법인은 넥타이·가방 등을 제조하여 백화점·아울렛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판매점”)에게 주로 특정거래조건(미판매재고 반품조건, “특정매입계약”)으로 납품하는 법인으로 2021. 10. 12. 처분청에 2016~2020사업연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로 수정하기 위한 기말 수정분개 시 조정률 적용 오류(*)로 인해 매출·판매수수료·이익 등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유로 2016~2020사업연도 각 법인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의 금액은 변경된 이력, 당초 금액과의 차이 과다로 신뢰하기 어렵고, 기존에 경정청구한 내용에도 모순됨에도 세금계산서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정정공시도 되어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22. 2. 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

(*)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매출의 인식시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점 등에 재화가 입고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매점에 출고된 재화의 출고금액에서 일정율의 금액(판매수수료)을 차감한 잔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결산시점에 실제 소비자 판매분으로 수정하는 조정분개를 하였다가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 초에 해당 조정분개를 환원시키는 역분개를 한 것임.

[판단] 청구법인은 고유의 ERP시스템을 통해 판매점에서의 제품판매, 입출고 내역, 반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백화점 등은 그 결과물을 POS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있다고 2019년도에 2016~2018사업연도의 특정매입 거래 관련한 경정청구에서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 및 ERP시스템 등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사용하는 EDI시스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DI시스템상의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제3자가 작성한 EDI시스템 자료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로 볼 수 없어 근거과세원칙에도 부합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경고 조치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정정공시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결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의견거절을 한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구법인은 6월말 법인이므로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판단] 신고기한은 2016. 9. 30.까지이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
 _계속 난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분 법인세는 2021. 9. 30.까지 경정청
 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21. 10. 12.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기한이 초과하
 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코멘트]

- 기재부는 법인세법상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익금·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기존 입장(제조업체가 판
 매점에 물건을 인도한 때)을 변경하였으나(변경 후 입장= 판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
 는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서이
 46012-11779, 2003. 10. 15.)이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됨(재화의 공급시기=제조업체가
 판매점에 물건을 인도한 때).

[심판례]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24서2795, 2025. 5. 27.

[사안] 청구법인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그 외 의약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출 품목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경로는 약국과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약국·병원 유통경로(직거래처)와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는 도매 유통경로가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 ~2021사업연도 중 도매상 약국 및 병원 등의 매출처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반품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반품(“쟁점1반품거래”)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기처리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반품(“쟁점2반품거래”, 쟁점1반품거래와 합하여 “쟁점반품거래”)받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는 차감한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반품거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쟁점반품거래는 어느 특정업체에게 차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취한 통상적인 영업정책이자 비용 지출로 보이는 점, 쟁점반품거래 금액은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던 특정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유지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매출의 창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품거래는 제약업계에서 청구법인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이전 공급분의 경우 반품을 제한하는 약정조차도 없었고(다만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의 제품에 대한 폐기 분류기준만 존재), 2021년 이후에 체결한 거래계약서상 반품조항인 제11조 제3항을 살펴보면 공급자와 수급자는 상호합의 하에 반품가격과 반품요청사유도 추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상 사용기간이 6개월(12개월) 미만이라도 상호합의 하에 반품거래를 할 수 있어 보이고 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반품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반품거래 비용을 접대비(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가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약사법」 제47조를 위반 시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행정처분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약사법」을 위반하는 비용이라 할 지라도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반품거래에 대한 제반사정만으로는 그 손금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반품거래를

[판단]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을 환수하고 그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처의 귀책사유 계속 등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제품이 환수되었음에도 '환입된 재화'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반품거래 금액 및 쟁점반품거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업체가 수술 실패를 사유로 반품받은 제품을 거래처인 치과병원으로부터 무상교환·제공해 준 경우,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며 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0서0675, 2020. 10. 13.).

[심사]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감심-2022-1809, 2025. 5. 15.

[사안]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일정 기간 내에 약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신주발행형”)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자기주식교부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행사 시점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행사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함. 청구인은 2020 1. 7. 임직원 9명이 2017년과 2018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450,000개(신주발행형 50,000개, 자기주식교부형 400,000개)의 행사차액을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어 201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당초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당초 경정청구의 행사차액 중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2017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사건 행사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 1)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함. 이후 청구인은 2021년에 나온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첨부하여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당초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이 사건 재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하함.

[판단]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의 단서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손비의 범위를 정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제19호의 2를 신설하여 「상법」 제340조의 2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목)에 대해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가목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가목 2)]을 손비로 규정하였고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제2조에 따르면 위 신설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는 2021. 8. 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행사차액(시가-행사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 8. 26.), 감사원이 2024. 6. 10. 이 사건 심리를 위해 「감사원법」 제45조에 따라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 1)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에 대해 2025. 3. 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현금을 받고 약정된 수량의 자기주식을 지급한 경우 약정된 수량을 넘어선 규모의 자기주식을 추가로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사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판단]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4, 2025. 3. 6.).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 계속 에 비추어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해당 법인은 이미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실질가치(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행사차액 중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조항과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4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행사차액 중 2018사업연도 이후 귀속 법인세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 1)에 따르면 「상법」 제340조의 2 등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사차액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에 열거된 손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일정 근무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사전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처분청의 주장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실무 관행과 다르고, 기획재정부도 행사차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교부할 필요가 없고 자기주식처분이 익과 관계없이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행사차액을 각 임직원의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점,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9호의 2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연혁을 보면 행사차액이 손금 대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는 차액보상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2015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포함하게 되면서 그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코멘트]

- 대상심사결정례의 판단부분에서 “감사원이……이 건 심리를 위하여……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 1)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으로 인용하고 있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4, 2025. 3. 6.)은 미공개인 것으로 보임.
- 조세심판원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물론 자기주식 처분손실도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2전5998, 2024. 3. 12.).

[예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49, 2025. 5. 20.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안 및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안) 질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해당 자기주식 및 기존 보유 자기주식을 A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신주를 받았으며, 이후 A법인의 또 다른 완전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질의) 질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2서8051, 2023. 11. 23.).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서면-2023-법규법인-2133, 2025. 5. 2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제88조(부당 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결국, 대상예규는 연결납세방식적용 내부 거래 중 용역거래가 아닌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

[예규]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기준-2025-법규법인-0046, 2025. 5. 27.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기재부는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3, 2016. 10. 24.). ☞ 대상예규는 기재부와 동일한 입장임.
- 기재부와 달리, 조세심판원은 국내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있음(조심 2021인1896, 2022. 3. 7.).

조세특례제한법

[예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기준-2024-법규법인-0189, 2025. 5. 28.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개정) 부칙(“쟁점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코멘트]

- 쟁점부칙 제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대상예규의 사안: 질의법인은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2019~2022년에 걸쳐 투자를 하였으며, 2019과세연도에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 미적용으로 쟁점부칙에 따라 완료기준(예외)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019과세연도는 종전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0~2022과세연도는 쟁점부칙요건 미충족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진행기준(원칙)으로 적용받고자 경정청구 제기함.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구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제25조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쟁점부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현행 조특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한 바 있음(서면-2023-법인-1189, 2023. 6.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서면-2025-국제세원-0819, 2025. 5.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의 판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코멘트]

- 국조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2항 제3호는 거래 당사자 한쪽이 각 목의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 내지 마목에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국조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소득세법

[심판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속한 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5중0776, 2025. 5. 14.

[사안] 청구인은 2021. 4. 1. 경기도 소재 토지를 A법인(“매수법인”)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쟁점매매계약”, 잔금지급일 2022. 9. 30.)을 체결한 후 계약금(“쟁점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수법인에 2022. 10. 26.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2022. 10. 26. 매수법인에 계약해제를 최종 통보하였음. 이후 매수법인은 2022. 12. 8.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고 2024. 5. 8. 그대로 확정되었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이 속하는 2022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2024. 11. 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는 매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24년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 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의 2에서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잔금지급일인 2022.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2. 10. 12.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니 2022. 10. 26.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22. 10. 26. 매수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최종통보하여 2022년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이에 불응하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한 2022년이라 할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 발송 후 매수법인이 기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일부잔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매수법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액수가 감액되었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시점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0서0675, 2020. 10. 13.).

[예규]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서면-2024-법규소득-2704, 2025. 5. 15.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 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코멘트]

- 2024. 7. 10.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법에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제도 관련 규정이 신설됨(벤처기업법 제16조의 17 내지 제16조의 19).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제도를 주식의 교부시점에 따라 선지급 방법과 후지급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12 제1항),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되 성과나 보유기간 등 사전에 체결한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해당하고, 후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에 해당함.
- 대상예규의 질의자는 성과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을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판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사안] 원고2회사와 원고3회사(원고2회사와 통틀어 “원고 모회사들”)은 거래처들(“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고1회사에 공급해왔음. 원고2회사는 원고1회사의 지분 33.26%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1회사는 원고3회사의 지분 79.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들은 기업집단인 A그룹에 속해있음. A그룹의 회장과 그 배우자는 원고1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2007년경 원고 모회사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 모회사들이 원고1회사에 공급하는 물품들 중 일부를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B사와 원고4회사(B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자회사”)가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원래는 원고 모회사들이 원고1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급대금을 이 사건 각 자회사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된 공급대금 중 상당액을 각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을 하였음. 한편 원고2회사는 2017. 9. 1. B사를 흡수합병하였고, A그룹 회장과 배우자의 횡령범행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각 자회사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에 관한 납세의무를 실제 사업자인 원고 모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자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받는 자’가 이 사건 각 자회사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자회사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하였던 소득금액을 원고 모회사들의 익금에 산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법인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출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으로 원고2회사에 대하여는 2011년 1기분부터 2017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원고3회사에 대하여는 2011년 1기분부터 2017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08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각 증액경정·고지함.

[판단]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 관련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탈루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형태나 거래 방식, 해당 사업장 내 수익이나 비용 등의 관리 및 자금 운영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판단] 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등). 원고 모회사들과 이 사건 각 자회사는 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하여 별도로 이루어졌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원고 모회사들이 이 사건 각 자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자신들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 모회사들은 이 사건 각 자회사를 인수한 이후 매출의 외형을 이 사건 각 자회사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신청·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모회사들이 이 사건 각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당시 원고 모회사들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은 해당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원고 모회사들의 사업자등록으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로 마쳐진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 모회사들인지, 아니면 이 사건 각 자회사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자회사는 A그룹 회장에 의해 개인적으로 설립 또는 그 다수 지분이 양수되었다가 원고 모회사들에 의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다수 지분이 인수되어 그 자회사로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자회사는 명의가 이전된 거래로 인한 수익만 거둘 뿐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지출금액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등의 횡령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원고 모회사들은 이 사건 각 자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의 외형을 이 사건 각 자회사로 이전시키면서 이 사건 각 자회사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큰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원고 모회사들)와 명의자(이 사건 각 자회사)가 달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매입세액은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모회사들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자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른 지출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의 부과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볼 소지가 큼. 나아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법인세 관련 계산서 포함)를 발급·수취한 주체 역시 원고1회사 및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임한 원고 모회사들이 아니라, 명의자인 이 사건 각 자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 모회사들이 아닌 이 사건 각 자회사에 의하여 발급·수취된 것으로 귀결됨. 따라서 원고 모회사들은 원고1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2회사는 비록 B사 명의의 계산서가 발급되었을지라도 구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자회사가 원고1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자회사가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 사건 각 자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자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은,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가 규율하고자 하는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코멘트]

-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 사건 각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모회사들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각 자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해당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원고 모회사들의 등록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세액에서 그대로 공제될 수 있음은 물론,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정한 지출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의 부과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대법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판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사안] 원고는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2016. 11. 24. A사와 미술작품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제1계약”)을, 2018. 6. 28. B사(A사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양산시 신축건물 현장 미술작품(미디어아트) 제작 설치’에 관하여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제2계약”,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각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9. 1. 7.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에게 2017년 1기 및 2018년 2기,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

[판단] 원심은 이 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이로써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각기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함.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예술창작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창작품의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예술창작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인바, 이 사건 각 계약은 건축주인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이에 관한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당시로서는 예술창작품 자체와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놓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면서 단일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해진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컸는바,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

[판단]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계속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 판단하여야 함.

[코멘트]

-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당초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판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4서5954, 2025. 5. 14.

[사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6. 7. 20.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납부기한 : 2023. 9. 30.).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A사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2023. 9. 26. 처분청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이 2024. 3.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처분청은 2024. 3. 18. 납부기한을 2024. 4. 1.로 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2024. 3. 26. 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은 추가로 2024. 7. 1.까지 연장되었음. 처분청은 2024. 6. 17. 납부기한을 2024. 7. 1.로 하여 납부서를 다시 발부하였음. 청구인은 2024. 6. 21.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함.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와 같이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그 세액이 거액이거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연부연납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한편, 국세징수법 제13조는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이전이라도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연부연납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며, 위와 같은 규정 및 징수 실무상 연부연납과 납부기한의 연장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 9. 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2023. 9. 30.) 이내인 2023. 9. 26.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2024. 4. 1.) 이내인 2024. 3. 26. 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은 2024. 7. 1.까지 연장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한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의 신청기한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하겠음.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연부연납신청기한을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_계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는 위 규정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연부연납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보이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2023. 9. 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 담당자와 그 납부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신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을 당초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연부연납신청을 미루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였음), 특히, 청구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이 건에 있어서는 연부연납신청의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만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코멘트]

- 기획재정부는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 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한 바 있음(재재산46014-26, 1999. 10. 6.).

지방세법

[예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부동산세제과-1201, 2025. 4. 23.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전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적용함이 타당함.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3지3643, 2023. 8. 22. 결정 등 참조).
- 과거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 주택등 “처분”은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전 주택 처분일 현재에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종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1190, 2022. 4. 26.). ☞ 대상예규는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임.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